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2757
------------	------

2025년 6월 20일
교 육 위 원 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5월 26일, 허훈 의원
2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3. 상정일자 :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
(2025년 6월 20일 상정, 수정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허 훈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서울경찰청 발표에 따르면, 관내 학교의 성폭력·성희롱 신고 건수 가운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(11.3%)가 강제추행(55.9%)과 성희롱(16.8%)에 이어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됨.
- 이러한 불법 촬영 행위는 기존에 주로 화장실에서 발생한다고 인식되어 왔으나, 실제로는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사생활 보호가

절실한 취약 공간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- 이에 현행 조례에 화장실 외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들을 포함하여 개정함으로써 해당 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‘화장실 등’의 정의를 ‘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’로 하여 본 조례의 대상을 확대함(안제2조제1호 신설).
- 조례상 ‘화장실’을 ‘화장실 등’으로 변경함(안 제1조 및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허훈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757호로 발의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불법 촬영 가능성이 잠재된 장소 범위를 화장실만이 아닌 다른 장소까지 확대함으로써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‘화장실’을 ‘화장실 등’으로 규정하고,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- 현행 조례는 학교 및 행정기관 내 화장실의 불법촬영 범죄 발생 및 유포 등으로 인해 구성원의 불안감과 2차 피해 발생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.
- 그러나 동 조례 제정 이후, 적용 대상을 화장실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,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조례의 제명이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」로 변경되었고, 일부 조항(제5조¹⁾) 또한 ‘화장실’을 ‘화장실 등’으로 개정하였습니다.²⁾
-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(정의)에 ‘화장실 등’을 정의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로 정의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, 여전히 조례 내 ‘화장실’로만 명시된 조항들을 ‘화장실 등’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현재 서울시교육청 역시 매년 ‘학교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 및 대응 계획’을 수립하고, 전문적 점검을 위해 위탁점검과 자체점검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 점검 대상을 화장실에만 국한하지 않고 ‘화장실, 탈의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가능성이 높은 장소’로 정하고 있습니다.³⁾
- 따라서 장소 불문하고 여전히 사회적 문제⁴⁾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고, 조례 제명과의 일관성과 조례 내 용어 해석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.

1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」 제5조(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)

2) 2023.10.5. 개정

3)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2025년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 및 대응 계획(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, 2025.1.)

4) 국토부 산하 공사 여성 탈의실·화장실서 ‘불법 카메라’ 발견돼(한겨레, 2023.2.24.)
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카 설치…30대 역무원 구속기소(중앙일보, 2024.7.31.)

- 다만 제5조의2(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)의 경우, 화장실 설치시와 설치된 화장실을 구분하여 불법촬영 예방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,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할 경우 본래의 취지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, 기존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제5조의2(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)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에 화장실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둘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- 서울시교육청 또한 제5조의2(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)는 화장실 설치에 대한 조항으로, 개정 조항에서 제외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6864, 2025. 6. 4.)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Ⅴ. 토론요지 : 없음.

Ⅵ. 수정안의 요지

- “설치한 화장실 등의” 를 “화장실 설치 시” 로 수정함(안 제5조2 제1항).
- “화장실 등” 을 “화장실” 로 수정함(안 제5조2 제2항).

Ⅶ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757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6월 20일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‘화장실’ 로만 명시된 조항들을 ‘화장실 등’ 으로 수정하여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를 확대하려는 것임.
- 그러나 안 제5조2(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)의 경우, 화장실 설치시와 설치된 화장실을 구분하여 불법촬영 예방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,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할 경우 본래의 취지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- 따라서, 안 제5조2 제1항 및 제2항은 개정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5조의2를 삭제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2를 삭제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
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5조의2(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)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에 <u>화장실 설치 시</u>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둘 수 있다.	제5조의2(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) ① - ----- ----- <u>설치한 화장실 등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5조의2(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) ① <u><삭 제></u>
②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<u>화장실</u> 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두기 위해 <u>안심스크린</u>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	② ----- <u>화장실 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② <u><삭 제></u>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화장실”을 “화장실 등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“화장실 등”이란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관(이하 “기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기관”으로, “화장실을 말한다”를 “화장실 등에 적용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화장실”을 각각 “화장실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화장실”을 “화장실 등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화장실”을 “화장실 등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화장실”을 “화장실 등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화장실”을 “화장실 등에서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의 <u>화장실에서</u>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 <u>화장실 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 <u>신 설</u> 〉 1. ~ 3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“ <u>화장실 등</u> ”이란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. 2. ~ 4. (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<u>기관</u> (이하 “기관”이라 한다)에 설치되어 학생,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<u>화장실</u> 을 말한다. 1. 2. (생략)	제3조(적용범위) ----- <u>기관</u> ----- ----- <u>화장실 등</u> 에 적용한다. 1. 2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<u>화장실</u>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	제4조(책무) ① ----- ----- -- <u>화장실 등</u>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② 교육감은 <u>화장실</u>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·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제6조(전문인력 확충) ① 교육감은 <u>화장실</u> 불법촬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 제7조(신고체계의 마련)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의심되는 <u>화장실</u>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 제8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<u>화장실</u>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제9조(협력체계의 구축) 교육감은 <u>화장실</u> 불법촬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·점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	-----. ② ----- <u>화장실</u> 등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6조(전문인력 확충) ① ----- <u>화장실</u> 등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7조(신고체계의 마련) ----- ----- <u>화장실</u> 등----- -----. 제8조(실태조사) ----- <u>화장실</u> 등----- ----- ----- -----. 제9조(협력체계의 구축) ----- <u>화장실</u> 등에서의 ----- ----- ----- -----.